

## 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】

영 주 시

##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

의 안	48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3.
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### 1. 개정이유

「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」에 의한 읍면동 존치·이관사무의 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골자

시장의 권한중 수도사업소장 또는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를 삭제함(안 제24조)

#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## 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신·구조문대비표**  
【영주시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】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 또는 읍·면·동장에게 위 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 치신고 등의 접수</li><li>2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</li><li>3.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</li><li>4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신고</li><li>5.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</li><li>6.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료의 징수</li><li>7.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</li><li>8.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</li><li>9.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접용료 징수</li><li>10.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의 징수</li><li>11.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</li><li>12.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</li><li>13.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 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</li><li>14.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</li><li>15.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</li></ol>	제24조 <삭제>